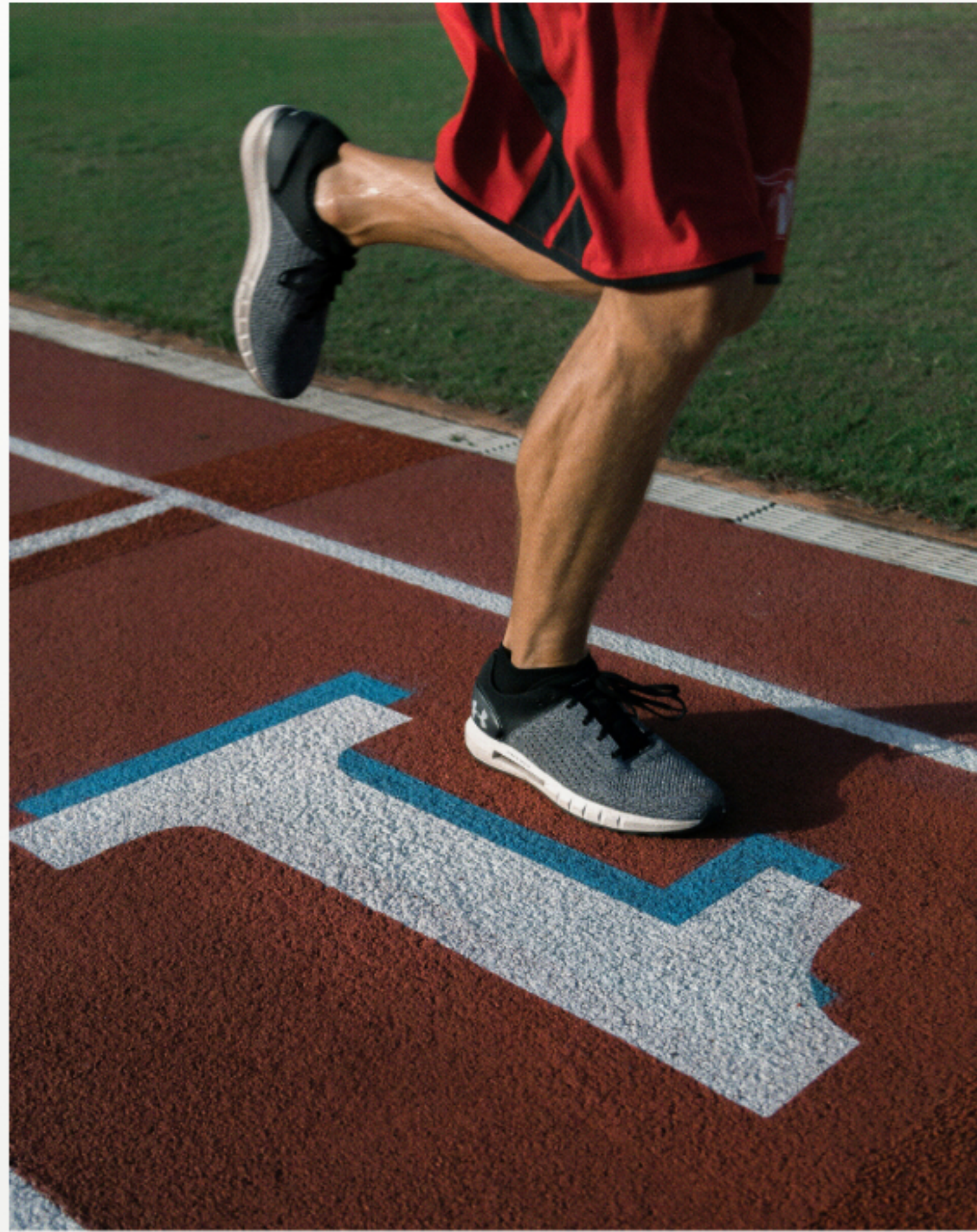




막판 스퍼트도 1위가 많다 실전집중 프로그램

뒤늦은 불안도, 지금의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빠르게 따라잡는 가장 검증된 길

<변리사스쿨 종합반>



변리사스쿨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1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¹⁾ 이 법은 _____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_____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산업발견

제2조(디자인권의 효력)²⁾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_____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디자인, 유사

제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³⁾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_____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_____ · _____ 또는 _____과 도면에 적힌 _____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출원서, 도면, 사진, 견본, 디자인의 설명

제2조(정의)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_____ [_____, _____ 및 _____을 포함한다. 이하

- 1) 특허법 제1조(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 → 산업발견 이바지 vs 상표를 보호 → 산업발견 이바지 & 수요자 이익 보호 vs 디자인을 보호·장려 → 산업발견 이바지
- 2)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 특허발명 실시 독점 vs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사용 독점 vs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 실시 독점
특허법: 실시권 - 특허발명, 배타권 - 특허발명, 균등범위, 이용관계, 간접침해
상표법: 사용권 - 동일 상표·상품, 배타권 - 동일·유사 상표·상품, 간접침해
디보호법: 실시권 - 동일·유사 디자인, 배타권 - 동일·유사 디자인, 이용관계, 간접침해
- 3)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vs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지정상품 vs 출원서, 도면(사진·견본),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
- 4) 특허법 제2조(정의) : 발명이란 자기창고 vs 상표란 자타상품식별 위한 표장 vs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화상의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다]의 _____ · _____ · _____ 또는 이들을 _____ 한 것으로서
_____ 을 통하여 _____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_____ (_____, _____ 및 _____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_____에 이용되거나
_____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_____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 형상, 모양, 색채, 결합, 시각, 미감, 글자꼴, 숫자, 문장부호, 기호, 기기의 조작, 기능, 화상의 부분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

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는 행위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⁵⁾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
 _____ 후 _____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
 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
 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출원일, 20년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⁶⁾ ① 디자인권은 _____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
 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제52조(출원공개)⁷⁾ ① 디자인등록_____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a vs 등록일부터 10년+10년 단위로 갱신 可 vs 출원일부터 20년
 6)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특허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vs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vs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등록공고
 7)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지난 후·조기공개신청시 출원공개 vs 출원공개 제도 無, 대신 출원공고 제도 有
 vs 공개신청시·협의제 위반 거절결정·거불심 기각심결 확정시 출원공개

출원인, 신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_____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후단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⁸⁾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_____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⁹⁾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 _____ 및 디자인 _____ 등록 _____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원, 일부심사, 이의신청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¹⁰⁾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

8)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출원 → 심사청구 → 특허결정 → 특허료 납부 vs 출원 → 출원공고결정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vs 출원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9)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無, 특허법·상표법에는 일부심사등록제도 無

10)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주소 + 명[도]요 vs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vs 물품, 물품류, 창작자 성명·주소 + 도·사·견

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_____(이하 “_____”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_____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_____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_____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_____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_____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_____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_____ 및 각 디자인의 _____(제41조에 따라 _____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물품, 물품류, 물품류, 관련디자인,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창작, 복수디자인, 수, 일련번호, 복수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_____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_____
 2. 디자인의 _____
 3. 디자인의 _____(제41조에 따라 _____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_____하여 디자인의 _____ 또는 _____을 제출할 수 있다.

도면, 물품, 물품류, 설명, 일련번호, 복수디자인, 갈음, 사진, 전본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5조(수수료)¹¹⁾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¹²⁾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¹³⁾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¹⁴⁾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11)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83조 제1항(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2)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특허취소신청 vs 이의신청 vs 이의신청

13)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심사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vs 이의신청인 vs 이의신청인

14)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특허관리인 vs 상표관리인 vs 디자인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_____”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¹⁵⁾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출x다신청x불복

제8조(대리권의 증명)¹⁶⁾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¹⁷⁾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 출원특신청우불복 vs 출x상신청x불복 vs 출x다신청x불복

16)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17)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¹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¹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²⁰⁾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18)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19) 특허법 제9조(개별대리)

20)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vs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vs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_____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청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²¹⁾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_____의 _____
5.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출원공개, 신청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²²⁾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²³⁾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21)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22) 특허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3) 특허법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²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²⁵⁾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등의 _____기간,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_____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
 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유, 보정, 심판의 청구기간

24)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25)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거불심 청구기간 vs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 보불심 청구기간, 거불심 청구기간 vs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 보불심 청구기간, 취불심 청구기간 : 특허법에는 이의신청절차, 보불심절차, 취불심절차 無

제18조(절차의 무효)²⁶⁾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²⁷⁾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²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²⁹⁾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

26)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27)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거불심, 재심 vs 보불심, 거불심, 재심 vs 보불심, 거불심, 취불심, 재심

28)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29) 특허법 제19조(절차의 속행)

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³⁰⁾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³¹⁾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30) 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31) 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³²⁾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_____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_____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대방, 요청

제25조(절차의 중지)³³⁾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

32) 특허법 제22조(수계신청) :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명령 요청(상대방) vs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신청(상대방) vs 수계신청(수계할 자), 수계명령(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 수계명령 요청(상대방)

33) 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³⁴⁾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³⁵⁾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_____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록신청서류

34) 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35) 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등록신청서류, PCT 국제출원서류 vs 등록신청서류,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류(제170조) vs 등록신청서류, 헤이그 국제출원서류(제176조)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_____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편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³⁶⁾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³⁷⁾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6)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37)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³⁸⁾**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³⁹⁾**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8) 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39) 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47조(절차의 보정)⁴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⁴¹⁾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

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
다.

40)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41)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⁴²⁾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⁴³⁾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9조(공동출원)⁴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⁴⁵⁾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2)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4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발명자 or 승계인 vs 사용자 or 사용하려는 자(사용의사) vs 창작자 or 승계인

44)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45)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⁴⁶⁾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⁴⁷⁾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2조(정의)⁴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 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46) 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47) 특허법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48) 특허법 제2조(정의)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⁴⁹⁾ ① _____상 이용할 수 있는 _____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업,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되었거나 _____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된 _____에 게재되었거나 _____을 통하여 _____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_____한 디자인

공지, 공연히 실시, 반포, 간행물, 전기통신회선, 공중, 유사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 _____·_____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_____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제1호, 제2호, 결합, 널리 알려진

③⁵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_____, _____ 또는 _____에

49)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확신 vs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의 성립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신

특허법 신규성 反 : 공지발명과 출원발명이 동일할 때

디보호법 신규성 反 :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동일·유사할 때

특허법 진보성 反 : 공지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을 때

디보호법 창작비용이성 反 : 공지디자인 or 주지의 형상·모양·색채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을 때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_____와 _____하거나 _____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제56조, 제90조제3항, 일부, 동일, 유사, 출원인

50) 특허법 제29조 제3항 :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2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회차 복습

- 디자인 성립요건 - 물품성(글자체, 화상 제외) - 독립된 거래대상 or 가능성 + 호환 or 가능성 + 양산·운반가능한 유체동산
 - 형태성
 - 시각성 -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것은 등록 不可
 - 심미성
- 절차총칙 -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교체명령 전 절차의 무효신청, 출원공개신청,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 보불심, 취불심 등
 - 디보법에는 없는 제도 - 심사청구, 변경출원, 존속기간연장, 국내우선권주장 등
- 출원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물품, 물품류, 창작자 등
 - 도면·사진·견본 - 물품,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등
 - 보완명령 - 취·성·도·한
- 27, 3①本, 39, 3①但
-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 -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록 不可, 단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可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¹⁾ ① _____할 수 있는(공업상 이용가능성) _____(성립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신규성)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업상 이용,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되었거나 _____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에 게재되었거나 _____을 통하여 _____할 수 있게 된 디자인

1) 특허법 제29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_____한 디자인

공지, 공연히 실시, 반포된 간행물, 전기통신회선, 공중이 이용, 유사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_____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창작비용이성).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쉽게 창작, 널리 알려진

③²⁾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_____, _____ 또는 _____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_____와 _____하거나 _____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확대된 선출원주의).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제56조, 제90조제3항, 일부, 동일, 유사, 출원인, 출원인

제46조(선출원)³⁾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선출원주의).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_____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_____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_____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협의제).

2) 특허법 제29조 제3항 :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허법 제36조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먼저, 협의, 협의, 협의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_____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자인공보, 제34조제2호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5)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_____하거나 _____한 디자인

2.6)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공서양속 反)

3.7)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_____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특허법 제32조

5) 실용신안법 제6조 제1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6) 특허법 제32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7) 상표법 판례 :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8) 물품의 _____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_____된 디자인

동일, 유사, 혼동, 기능, 만으로

제35조(관련디자인)⁹⁾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¹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하 “_____”이라 한다)과 _____¹¹⁾ _____¹²⁾한 디자인(이하 “
_____”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_____이내¹³⁾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_____ 및 _____에도 불구
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_____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_____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_____,
_____ 또는 _____ 등으로 _____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⁴⁾.

기본디자인, 만, 유사, 관련디자인, 3년, 제33조제1항 각 호, 제46조제1항·제2항, 설정등록, 취소, 포기, 무효심결, 소멸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_____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_____과 _____ 유
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¹⁵⁾.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_____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¹⁶⁾.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_____ 및 _____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디자인, 관련디자인, 만, 전용실시권, 제33조제1항 각 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

8) 특허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9)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10)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1) 디보법 제62조 제3항 無(일부심사에서는 심사x)

12)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5호

13)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6호

14)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2호, 제3호

15)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1호

16) 디보법 제62조 제3항 제7호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_____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5. _____의 디자인 _____ 또는 디자인등록 _____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 등록번호, 출원번호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_____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본디자인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_____하는 _____을 할 수 있다.

변경, 보정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_____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_____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_____이

전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함께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_____의 디자인권과 _____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_____ 이전하여야 한다.

⑥ _____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_____에 관한 2 이상의 _____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_____ 이전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함께, 기본디자인,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함께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_____의 디자인권과 _____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_____에 설정하여야 한다.

⑥ _____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_____에 관한 2 이상의 _____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_____ 설정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동시, 기본디자인,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함께



품격있는 강의,
믿을수있는 강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리사스쿨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3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3회차 복습

- 신규성 - 공지 vs 출원디자인 1 : 1 대비 - 동일·유사 판단
- 창작비용이성 - 공지 or 주지형태 vs 출원디자인 多 : 1 대비可 - 곤란성 판단
- 선원 - 선출원디자인 vs 출원디자인 1 : 1 대비 - 동일·유사 판단
- 확산 - 선출원디자인 일부 vs 출원디자인 1 : 1 대비 - 동일·유사 판단 - 동일인(출원인)·동일자 적용 x
- 부등록사유 - 국국군훈포기, 공서양속, 혼동, 기능성
- 관련디자인 - (주) 기본디자인 출원인, (기)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서) 출원서 취지, 기본디자인 표시
 - (호) 신규성, 선원 예외, 존속기간
 - (기타) 관련 ↔ 단독 보정可, 배타권자 동일인일 것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¹⁾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²⁾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_____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_____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같은 물품류, 100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

1) 특허법 제45조

2)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 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_____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_____ 및 각 디자인의 _____(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3. 디자인의 _____(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복수디자인, 수, 일련번호, 일련번호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_____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_____의 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일부디자인, 일부디자인, 전체, 일부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³⁾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_____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통일성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⁴⁾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_____ 출원할 수 있다.

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및 _____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_____하는 _____을 할 수 있다.

변경, 보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

3)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4)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_____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_____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_____ 외의 부분 및 _____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33조, 제46조제1항·제2항, 제1항 각 호, 제2항제2호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_____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_____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_____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_____·_____·_____되거나 디자인등록_____이 _____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_____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_____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_____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디자인, 관련디자인,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 확정, 출원인, 유사, 3년, 제35조제3항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_____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_____에 해당하거나 _____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_____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정보, 제33조 제1항 각 호, 제46조제1항·제2항, 명백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⁵⁾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_____ 또는 _____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⁶⁾ 삭제

12개월, 출원공개, 등록공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⁷⁾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_____ 및 _____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_____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_____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_____와 최초로 출원한 _____ 및 출원_____을 적어야 한다.

제33조, 제46조, 6개월, 출원시, 취지, 국명, 연월일

5) 특허법 제30조

6) 특허와 다르게 취지표시, 증명서류 제출 기한 규정 삭제

7) 특허법 제54조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_____부터 _____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을 적은 서면 및 _____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_____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⁸⁾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_____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_____부터 _____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출원일, 3개월, 연월일, 도면, 출원번호, 정보, 정당한 사유, 만료일, 2개월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_____부터 _____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출원일, 3개월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⁹⁾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_____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_____부터 _____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8)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9)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정당한 사유, 만료일, 2개월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¹⁰⁾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 _____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_____, _____의 기재사항이나 _____ 또는 _____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_____디자인등록출원을 _____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_____의 디자인등록출원을 _____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 _____등록출원을 디자인 _____등록출원으로, 디자인 _____등록출원을 디자인 _____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출원서, 도면, 도면, 사진, 견본, 관련, 단독, 단독, 관련, 일부심사, 심사, 심사, 일부심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_____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 _____(이하 “디자인 _____”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_____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_____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_____부터 _____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_____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 _____을 한 것으로 본다.

거절결정, 등록결정, 등록여부결정, 발송, 기간, 청구일, 30일, 보정서, 출원

제49조(보정각하)¹¹⁾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_____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10) 특허법 제47조

11) 특허법 제51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_____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_____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 _____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_____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_____을 말한다)의 _____를 _____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요지, 심판청구기간, 일부디자인, 등록여부결정, 확정, 일부디자인, 심사, 중지

제50조(출원의 분할)¹²⁾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_____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_____등록출원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_____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40조, 복수디자인, 보정, 30일

12) 특허법 제52조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¹³⁾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¹⁴⁾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¹⁵⁾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13) 특허법 제34조

14) 특허법 제35조

15) 특허법 제99조의2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4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4회차 복습

- 1디자인 1출원 -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도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可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可
 - 로카르노 협성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물품류 기재, 가급적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지재처장이 고시한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물품명 기재, 단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라면 可
- 복수디자인 - 같은 물품류 + 100개 이내 - 위반시 41反, 40①反
 - 일체 - 보완명령
 - 디자인별 - 비밀디자인 청구, 보정각하, 출원공개신청, 우선심사, 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이의신청, 등록료 납부시 포기, 디자인권 이전, 디자인권 포기, 디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한 벌 물품 디자인 - 2 이상의 물품이 동시 사용되는 경우 +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 위반시 42反, 40①反
 - 가급적 시행규칙 별표 5 의 한 벌 물품명으로 기재
 -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심사기준)
- 일부심사 - 1류(식품), 2류(의류), 3류(가방·잡화), 제5류(직물지),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구류)
 - 신·창(주지형태 제외)·선·확 / 기본디자인과만·관련디자인과만 심사 제외
 - 신·선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심사可
 - 정보제공 있는 경우 모두 심사可
 - 이의신청,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경우 과실 추정
- 신규성 상실 예외, 조약우선권 주장, 보정, 보정각하, 직권보정, 분할출원

제61조(우선심사)¹⁾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법 제61조 : 1호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 2호 긴급 처리 필요, 3호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

1. 제52조에 따른 _____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_____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출원공개, 일부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²⁾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_____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

2) 특허법 시행령 제9조 : 방·녹4~~반~~수국 / 벤중직지 / 국조~~국~~출합 vs 방·녹4수국 / 벤중직지~~디~~ / 국조출합

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1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³⁾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의 준용)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⁵⁾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_____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허법 제57조 : 심사 vs 심사, 이의신청

4) 특허법 제68조

5) 특허법 제58조 : 등록, 전담기관 vs 지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⁶⁾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정보 제공)⁷⁾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출원심사) 또는 특허심판원장(거불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보정각하)⁸⁾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⁹⁾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¹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

6) 특허법 제58조의2 : 거짓등록, 등록기준 미달, 비밀누설 vs 거짓지정, 지정기준 미달

7) 특허법 제63조의2

8) 특허법 제51조 : 최후·재심사청구시 + 47②·47③·51①(청구항 삭제 예외)反 vs 아무 때나 + 요지변경

9)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10)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¹¹⁾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_____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_____,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_____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직권 재심사, 일부 디자인, 일련번호, 물품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¹²⁾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1) 특허법 제63조

12) 특허법 제62조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¹³⁾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_____에
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_____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일부 디자인, 일부 디자인

13)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¹⁴⁾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_____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_____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부 디자인, 일부 디자인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¹⁵⁾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¹⁶⁾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¹⁷⁾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6조(직권보정)¹⁸⁾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14) 특허법 제66조

15) 특허법 제67조

16) 특허법 제67조의2

17) 특허법 : 재심사청구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종전 결정 취소 x vs 無

18) 특허법 제66조의2 : 요약서 직권보정만 취하간주된 경우는 재심사 x vs 직권보정 취하간주된 경우 무조건 재심사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¹⁹⁾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_____, _____, _____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 특허법 제66조의3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

제52조(출원공개)²⁰⁾ ① 디자인등록_____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_____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_____의 등본이 _____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출원인, 신청, 일부, 제34조제2호, 결정, 송달

제53조(출원공개 효과)²¹⁾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는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간접침해), 제118조(서류제출명령) 또는 「민법」 제760

20) 특허법 제64조 :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공개신청시 vs 공개신청시, 협의제 反 거결 확정 후

21) 특허법 제65조

조(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제766조(소멸시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²²⁾ 지식재산처장은 _____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_____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_____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후단, 확정, 제34조제2호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²³⁾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²⁴⁾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 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_____되지 아

22)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23) 특허법 제87조 제3항

24) 특허법 제216조

니하고 디자인권의 _____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_____ 또는 _____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원공개, 설정등록,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제43조(비밀디자인)²⁵⁾ ① 디자인등록_____은 디자인권의 _____부터 _____ 이내의 기간을 _____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_____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_____부터 최초의 디자인_____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_____에 의하여 _____하거나 _____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_____부터 _____을 초과할 수 없다.

출원인, 설정등록일, 3년, 정하여, 일부, 출원을 한 날, 등록료, 청구, 단축, 연장, 설정등록일, 3년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_____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_____,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_____, _____ 또는 _____의 _____나 _____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_____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_____ 또는 _____이 열람청구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⑥ 제52조에 따른 _____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동의, 심사,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송, 당사자, 참가인, 경고, 법원, 특허심판원, 출원공개신청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²⁶⁾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²⁷⁾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_____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_____ 및 _____(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_____ 및 _____

3. 디자인_____ 및 _____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_____ · _____ 또는 _____의 내용

증명, 성명, 주소,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도면, 사진, 견본

제116조(과실의 추정)²⁸⁾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_____.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²⁹⁾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6) 특허법 제126조

27)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28) 특허법 제130조

29) 특허법 제217조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 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³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0) 특허법 제222조

- 제79조(디자인등록료)³¹⁾**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³²⁾**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_____로 포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별

-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³³⁾**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³⁴⁾**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31) 특허법 제79조

32) 특허법 제215조의2

33) 특허법 제80조

34) 특허법 제81조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³⁵⁾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³⁶⁾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35) 특허법 제81조의2

36) 특허법 제81조의3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³⁷⁾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³⁸⁾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37) 특허법 제82조

38) 특허법 제83조

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³⁹⁾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40)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 등록_____, _____ 신청료, _____ 청구료 및 _____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_____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_____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_____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_____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39) 특허법 제84조

40) 출원(분할·분리·변경·우선심사신청 제외)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시 출원료·우주료 vs 출원(분할·분할의 기초·우선심사신청·거절의 유통지·결정 제외)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시 출원료·우주료·비밀디자인 청구료·출원공개 신청료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출원료,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출원공개, 분할, 기초, 우선심사의 신청, 거절이유를 통지, 결정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⁴¹⁾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⁴²⁾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⁴³⁾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⁴⁴⁾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41) 특허법 제85조

42) 특허법 제86조

43) 정정심결확정, 99-2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된 경우 vs 96-2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된 경우

44) 특허법 제87조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⁴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⁴⁶⁾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45) 특허법 제101조

46) 특허법 제118조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⁴⁷⁾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⁴⁸⁾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_____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각 디자인권

제97조(전용실시권)⁴⁹⁾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47) 특허법 제88조

48) 특허법 제99조

49) 특허법 제100조

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제99조(통상실시권)⁵⁰⁾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50) 특허법 제102조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⁵¹⁾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_____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각 디자인권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⁵²⁾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직무디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⁵³⁾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⁵⁴⁾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51) 특허법 제119조

52) 특허법 제119조

53) 특허법 제120조

54) 특허법 제124조



종합반 압도적 대세!
그동안 수많은 수험생이 검증한
변리사 스쿨 종합반!



변리사스쿨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5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5회차 복습

- 심사 / 재심사
- 공개 / 비밀디자인
- 등록료 / 등록의 효력 / 동의 / 디자인권 소멸 등
- 법정실시권

제97조(전용실시권)¹⁾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_____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_____에게 _____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_____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_____에게 _____ 설정하여야 한다.

, 같은 자, 동시, 관련디자인, 같은 자, 함께

제99조(통상실시권)²⁾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 제100조

2) 특허법 제102조

-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
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
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권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³⁾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
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⁴⁾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
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제81조의3 제5항

4) 특허법 제103조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⁶⁾ 타인의 디자인권이 _____ 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의 _____을 하거나 그 사업의 _____를 하고 있는 자(_____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_____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_____을 하였을 것(선출원)
2. 타인의 디자인권이 _____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_____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

5) 제103조의2

6)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 유사, 실시사업, 준비, 제100조, 날 전, 출원, 설정등록, 제33조제1항 각 호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⁷⁾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

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유사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⁸⁾ ① 등록디자인과 _____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

록 _____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_____에 출원되어 등록된 _____(이하

“_____”이라 한다)과 _____되는 경우 _____의 존속기간이 _____되

7) 제104조

8) 특허법 제105조 : 특허권과 후출원 아닌 디자인권의 저촉관계 vs 디자인권의 유사범위와 후출원 아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저촉관계 + 디자인권의 동일범위와 후출원 아닌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저촉관계

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_____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_____ · _____과 _____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출원일 전, 같은 날, 디자인권, 원디자인권, 저축, 원디자인권, 만료, 등록디자인, 유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축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⁹⁾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유사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¹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_____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_____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

9) 제122조

10) 특허법 제181조

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_____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_____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취소, 권리범위, 거절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¹¹⁾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¹²⁾ ①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제182조

12) 특허법 제183조

-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¹³⁾**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이용·저촉관계)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_____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유사

제108조(질권)¹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¹⁵⁾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13) 제138조 : 1항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 要 vs 1항 별도 요건 無

14) 특허법 제122조

15) 특허법 제123조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¹⁶⁾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_____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_____인 경우

, 사용, 결과물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¹⁷⁾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유사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¹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

16) 제96조

17)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18) 특허법 제181조

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¹⁹⁾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²⁰⁾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_____이 그 디자인등록출원_____에 출원된 타인의 _____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_____. _____ 또는 _____를 _____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 _____에 출원된 타인의 _____ 또는 _____과 _____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등록디자인, 일 전, 등록디자인, 유사,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상표, 이용, 일 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촉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_____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 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

19) 제94조

20) 특허법 제98조 : 특허권과 선출원 디자인권·상표권의 저촉관계 vs 디자인권의 유사범위와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의 저촉관계 + 디자인권의 동일범위와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의 저촉관계
특허권과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이용관계 vs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범위와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의 이용관계

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_____에 출원된 타인의 _____·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_____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
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_____ 또는 이와 _____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_____에 발생한 타인의 _____을 _____하거나 그 _____에 _____되
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할 수 없다.

, 일 전, 디자인권, 저촉, 등록디자인, 유사, 일 전, 저작물, 이용, 저작권, 저촉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²¹⁾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_____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_____·_____ 또는 _____과 도면에 적힌 _____에 따라 표현된 디자
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출원서, 도면, 사진, 견본, 디자인의 설명

제2조(정의)²²⁾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1) 제97조 : 청구범위 vs 출원서 기재사항 + 도면·사진·견본 + 도면에 적힌 디자인 설명

2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²³⁾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²⁴⁾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_____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_____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_____을 제시하여 _____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_____ 및 _____(_____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_____ 및 _____

3. 디자인_____ 및 _____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_____·_____ 또는 _____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장, 서면, 경고,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도면, 사진, 견본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²⁵⁾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제127조

24) 특허법 제126조

25)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²⁶⁾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²⁷⁾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26) 제131조

2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9항

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²⁸⁾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_____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_____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일부심사

제118조(서류의 제출)²⁹⁾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_____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_____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_____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손해, 정당한 이유

제220조(침해죄)³⁰⁾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8조(몰수 등)³¹⁾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 제130조

29) 특허법 제132조 : 자료제출명령(불응시 제재조치 有) vs 서류제출명령

30) 특허법 제225조

31) 특허법 제231조

- 제225조(비밀누설죄 등)³²⁾**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_____ 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_____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_____을 _____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제1항에 따라 _____을 _____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_____ 이하의 징역 또는 _____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청, 비밀디자인, 비밀디자인, 열람, 2년, 2천만원, 비밀사본, 열람, 2년, 2천만원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³³⁾**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 제221조(위증죄)³⁴⁾**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 _____,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에 대한 결정 또는 _____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2) 제226조

33) 특허법 제226조의2

34) 특허법 제227조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³⁵⁾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³⁶⁾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거짓행위의 죄)³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³⁸⁾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7조(양벌규정)³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35) 제224조

36) 특허법 제228조

37) 특허법 제229조

38) 특허법 제229조의2

39) 특허법 제230조

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9조(과태료)⁴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⁴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40) 제232조

41) 특허법 제224조의3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⁴²⁾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2) 제224조의4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⁴³⁾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3) 제224조의5

제55조(정보 제공)⁴⁴⁾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⁴⁵⁾ ① _____ 디자인 _____ 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_____ 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후 _____ 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_____ 를 받은 자는 그 _____ 를 받은 날부터 _____ 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_____ 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_____ 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부터 _____ 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37④, 40, 41, 42 제외)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일부심사, 설정등록된 날, 공고일, 3개월, 통지, 통지, 3개월, 지식재산처장, 디자인, 공고일, 1년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_____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_____ 의 표시

44) 제63조의2

45)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_____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_____ 및 필요한 _____의 표시

③ _____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부
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_____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
하여 _____를 제출할 기회를 주_____.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_____46)을 준용한다.

, 등록디자인, 취지, 이유, 증거, 심사장, 이의신청서, 디자인권자, 답변서, 어야 한다, 제121조제4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47)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부
터 _____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날, 30일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_____으로 구성되는 _____에
서 심사·결정한다.

② _____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③ _____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_____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48), 제132조제2항49) 및 제133조제2항50)·제3항51)을 준용
한다.

3명, 심사관합의체,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장, 심사장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46) _____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7) 상표법 제61조 :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vs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48)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 중 심사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사관에게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9) 심사장은 그 심사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50)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51) 심사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_____. 이 경우 _____나 _____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_____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_____.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_____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수 있다, 디자인권자, 이의신청인, 의견, 어야 한다, 등록디자인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_____.

할 수 있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답변서 제출기간) 및 제69조(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_____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_____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_____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_____”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_____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_____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_____”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_____및 이의신청_____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심사장, 각하, 취소, 취소결정, 처음부터, 기각, 기각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_____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_____과 _____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인, 디자인권자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_____의 _____(직권심리)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_____이 _____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_____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의견진술, 통지, 결정등본, 송달, 처음부터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필요한 경우 심사절차 중 지할 수 있다), 제129조(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척사유), 제142조제7항(민사소송법 통역, 중복금지, 소명, 당사자신문 규정 준용), 제145조(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증거조사·증거보전),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이의신청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부담, 이의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등 부담, 심판비용액은 결정 확정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 심판비용의 범위 등은 민사소송비용법 참고) 및 제154조(심

판비용액에 대한 집행권원)를 준용한다.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6회차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6회차 복습

-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질권
- 배타권 제한
- 실시권 제한
- 직접침해 성립요건
- 간접침해 성립요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서류제출명령
- 침비위허거비 + 과태료
-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디자인 이의신청
대상	특허권	only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
신청인	누구든지	누구든지 or 침해경고 받은 자
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	등록공고일 후 3개월 or 침해경고 받은 날부터 3개월(등록공고일 후 1년)
심리주체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지식재산처 심사관 합의체
신청이유	신진선확	37④, 40, 41, 42 제외 나머지 거절이유
신청	취소신청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등록공고일 후 6개월 or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까지 취소신청이유 보정 可	이의신청서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유 보정 可
방식	특허심판원장 방식 담당 심판부 지정 심판장 방식	지식재산처장 방식 담당 심사관 지정 심사장 방식
통지	심판장이 특허권자에게 취소신청서 송달 + 답변서제출기회 부여 無 심판장이 취소신청사실 등록권리자에게 통지 + 등록권리자 보조참가 可	심사장이 디자인권자에게 이의신청서 송달 + 답변서제출기회 부여 심사장이 이의신청사실 등록권리자에게 통지 + 참가제도 無
직권	직권심리, 직권 증거조사·보전, 직권 병합·분리(병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ust), 직권진행 可	직권심사, 직권 증거조사·보전, 직권 병합·분리 可
side 절차	특허권자 정정청구 可 증거조사·보전신청 可	디자인권자 정정제도 無 증거조사·보전신청 可
결정	취소결정 전 취소이유통지 must 서 각하결정, 신청 각하결정(불복 不可), 취소결정, 기각결정(불복 不可)	- 서 각하결정(심사기준), 신청 각하결정(불복 不可), 취소결정, 기각결정(불복 不可)
취하	취소이유통지 또는 결정 후에는 취하 不可	직권심사 통지 또는 결정 후에는 취하 不可
불복	서 각하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 可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취불심 可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¹⁾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²⁾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심판청구방식)³⁾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 1) 제139조
- 2) 특허법 제139조의2
- 3) 특허법 제140조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⁴⁾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4) 제140조의2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⁵⁾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 제141조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⁶⁾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⁷⁾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⁸⁾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⁹⁾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제142조

7) 특허법 제143조

8) 특허법 제144조

9) 특허법 제145조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¹⁰⁾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¹¹⁾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¹²⁾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¹³⁾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146조

11) 특허법 제148조

12) 특허법 제149조

13) 특허법 제150조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¹⁴⁾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¹⁵⁾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¹⁶⁾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¹⁷⁾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14) 제151조

15) 특허법 제152조

16) 특허법 제153조

17) 특허법 제153조의2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¹⁸⁾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¹⁹⁾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3조(참가)²⁰⁾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18) 제147조

19) 특허법 제154조

20) 특허법 제155조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²¹⁾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²²⁾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21) 제156조

22) 특허법 제157조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²³⁾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²⁴⁾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47조(직권심리)²⁵⁾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²⁶⁾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²⁷⁾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3) 제158조

24) 특허법 제158조의2

25) 특허법 제159조

26) 특허법 제160조

27) 특허법 제154조의3, 디자인보호법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없음(특허법 제154조의2)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²⁸⁾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²⁹⁾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28) 제164조의2

29) 특허법 제162조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³⁰⁾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1조(일사부재리)³¹⁾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심판비용)³²⁾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30) 제161조

31) 특허법 제163조

32) 특허법 제165조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³³⁾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³⁴⁾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33) 제166조

34) 특허법 제164조

-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³⁵⁾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³⁶⁾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_____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결정, 3개월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³⁷⁾ ① 디자인등록 _____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보정),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보정각하), 제63조(거절이유통지) 및 제65조(등록결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_____에 따른 _____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_____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_____이 _____될 때까지”로 본다³⁸⁾.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거절결정,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기간, 소, 판결, 확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³⁹⁾ 제134조제1항·제2항(답변서 제출기간), 제143조(참가) 및 제144조(참가신청)는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_____ 없는 제도, 상표법 제115조 : 출원공고 전 보정은 보불심 可, 출원공고 후 보정은 보불심 不可

36) 특허법 제132조의17 : 거불심 vs 상표법 제116조 : 거불심 vs 거불심, 취불심

37) 특허법 제170조

38) 거불심 재판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한 경우 특허법원에 보정각하불복 可,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상표법 제123조 제2항

39) 특허법 제171조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⁴⁰⁾ _____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_____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 _____ 또는 디자인등록 _____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이의신청, 거절결정, 취소결정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⁴¹⁾ ① 심판관은 제119조(보불심) 또는 제120조(거불심, 취불심)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⁴²⁾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_____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37④, 40, 41, 42 제외)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

40) 제172조

41) 특허법 제176조

42) 특허법 제133조

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⁴³⁾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⁴⁴⁾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

43) 제135조

44) 특허법 제138조

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
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
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58조(재심의 청구)⁴⁵⁾ ① 당사자는 확정된 _____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⁴⁶⁾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⁴⁷⁾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⁴⁸⁾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⁴⁹⁾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45) 제178조 :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확정된 심결 vs 확정된 심결

46) 특허법 제179조

47) 특허법 제180조

48) 특허법 제184조

49) 특허법 제185조

-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⁵⁰⁾**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_____ **51)**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서의 대가)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적격)⁵²⁾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正本 송부)⁵³⁾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50) 제186조

51)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 상표법 제162조 제1항

52) 특허법 제187조

53) 특허법 제188조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⁵⁴⁾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⁵⁵⁾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서의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⁵⁶⁾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⁵⁷⁾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54) 제189조, 디자인보호법에는 기술심리관 제도가 없음(특허법 제188조의2)

55) 특허법 제190조

56) 특허법 제191조

57) 특허법 제191조의2

- 제216조(불복의 제한)⁵⁸⁾**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58) 제224조의2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 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_____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_____(간접출원).

, 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_____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_____
2. 대한민국에 _____(법인인 경우에는 _____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_____가 있는 자

모두, 국민, 주소, 영업소, 거소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 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_____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_____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_____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_____(예시 : 미국, “도면에 도시되고 설명된 바와 같은 물품의 장식적 디자인”이라고 기재)

, 건본, 지정국, 청구범위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_____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편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

야 한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_____(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_____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_____ 또는 _____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_____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_____ 또는 _____이 없는 경우
 6. _____ 표시가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_____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 취지, 성명, 명칭, 주소, 도면, 견본, 지정국, 대체서류

-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_____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_____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_____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_____로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송달료, 보정, 무효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

(1)(iv)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v)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으로 한다.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와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을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 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언제 어디서나 완벽학습!
스마트한 합격 솔루션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장 많은 수험생이 신뢰하는 커리큘럼,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합격까지 한번에

< 변리사스쿨 온라인종합반 >



변리사스쿨